

## 펌뱅크 서비스 계약서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갑” 또는 “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이하 “을” 또는 “이용기관”이라 한다)는 펌뱅크 서비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제 1 장 기본사항

**제 1 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펌뱅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계좌번호의 지정)**

① “을”은 “갑”이 펌뱅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을”이 사용할 서비스 종류 및 예금계좌(이하 “모계좌”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신청 여부	서비스 종류	계좌번호	예금주명	거래 인감	수수료
	대량지급이체				당행이체 100 원/건 타행이체 500 원/건
	대량수납이체				의뢰건당 20 원+ 이체건당 150 원
	대량 거래명세전송				300 원/건
	급여이체				당행이체 면제 타행이체 500 원/건
	집금이체	모계좌			100 원/건
		자계좌			
	집금인번호전송				창구입금수수료 (1,500 원/건)
	수취인조회				당행의뢰 100 원/건 타행의뢰 200 원/건
	실시간지급이체				당행이체 100 원/건 타행이체 600 원/건
	실시간수납이체				의뢰건당 50 원 + 이체건당 700 원
	실시간 거래명세전송				500 원/전송건당
○	수수료인출계좌				

② “을”은 상기 ①항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갑”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갑”이 전산등록을 마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집금인번호전송계좌에 고객이 당행의 창구, ATM(CD)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갑”의 내국환수수료 기준에 따른다.

제 3 조 (수수료 등)

“갑”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을”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및 그 처리는 다음과 같다.

- ①수수료는 “을”이 요청한 의뢰건수 또는 “갑”이 실제로 처리한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 ②월중 발생한 수수료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여 별도 청구 없이 익월 10 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갑”이 “을”의 “수수료 인출 계좌”로부터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체 출금하기로 한다
- ③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효력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수수료는 본 계약 효력상실일에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을”의 “수수료 인출 계좌”에서 출금하고 부족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청구한다.
- ④서비스 수수료가 연체된 경우 서비스가 정지되며, 연체가 3 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서비스가 해지된다.
- ⑤전항의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갑”은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을”은 이의가 있을 경우 시행일 14 일전까지 서면으로 이의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며, 동 기간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갑”은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한다.

제 2 장 대량 수납이체 및 실시간 수납이체

제 4 조 (대량 수납이체 업무의 범위)

“갑”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을”이 고객으로부터 납입 받거나 상환 받아야 할 각종 수납대금을 “갑”에 개설된 “을”의 고객계좌에서 인출하여 “을”의 모계좌에 입금하는 자동계좌이체 업무로 한다.

제 5 조 (실시간 수납이체 업무의 범위)

“갑”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을”이 고객으로부터 납입 받거나 상환 받아야 할 각종 수납대금을 “갑”에 개설된 “을”의 고객계좌에서 즉시 인출하여 “을”의 모계좌에 즉시 입금하는 자동계좌이체 업무로 한다.

제 6 조 (신청서의 접수 등)

자동이체신청서의 접수, 신청내용의 전산등록 및 자동이체신청명세 전송 등의 업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①“갑”은 “을”이 “을”의 고객(이하 “납부자”라 한다)으로부터 자동이체신청서를 직접접수하여 “갑”에 자동이체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자동이체신청 직접접수이용기관으로 승인할 수 있다.
- ②“을”은 납부자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반드시 자동계좌이체약관 동의가 포함된 자동계좌이체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으로 징구하여야 한다.

③ “을”은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전산등록하고 이를 보관하며, 신청서의 원본 및 제 거래내역은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을 해지한 날로부터 5 년간 보관하고, 납부자가 자동이체 동의에 관한 내용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④ “갑”은 “을”로부터 접수한 자동이체 신청내역에 대한 동의여부를 납부자에게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갑”은 필요시 신청서 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점검 확인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을”이 직접 납부자로부터 신청서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을”이 납부자로부터 접수받는 신청서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납부자 또는 제 3 자가 납부자를 위하여 본인의 계좌를 출금계좌로 신청할 때 개인의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신분증 사본과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징구)을 첨부한 신청서를 받아 처리한다.

3. 납부자가 자동이체와 관련하여 출금계좌 등을 변경할 때에는 신규 자동이체신청으로 처리하며, 제 2 호에 준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⑥ “갑” 또는 “을”이 납부자로부터 신청서(신규,해지,변경 포함)를 접수처리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한다. 단, 실시간 자동계좌이체 이용기관은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1. “갑” 또는 “을”은 납부자의 신청서를 접수처리 한 후 익일(은행휴무일 인 경우 익영업일) 오전 12:00 까지 사전 약속된 출금계좌번호, 출금계좌의 예금주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전송하기로 한다.

2. “갑”과 “을”은 제 1 호에 따라 전송받은 데이터를 즉시 전산등록하고 처리결과를 당일 정해진 시각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3. “갑”은 “을”로부터 전송받은 자동이체 신청명세중 계좌번호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한 전산등록 불능명세를 정해진 시각까지 “을”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자동이체 신청등록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4. “갑”과 “을”은 데이터의 전송 및 전송결과를 수신하는 쪽에서 확인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5. “갑” 또는 “을”이 처리한 납부자로부터 신청서 접수처리 업무 및 자동이체처리 불능민원은 모두 “을”의 책임으로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갑”은 “을”을 대고객 민원업무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 제 7 조 (자동계좌이체 의뢰)

① “을”은 별도로 정한 전산처리절차에 따라 상호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자동계좌이체 의뢰명세를 사전에 정해진 시각까지 “갑”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수신 완료된 자동계좌이체 의뢰명세서를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을”의 정당하고 유효한 자동계좌이체 의뢰로 간주하며, 동 명세서는 “갑”의 동의없이 변경, 취소할 수 없다.

제 8 조 (자동계좌이체 처리)

“갑”은 “을”로부터 전송받은 자동계좌이체의 처리는 다음 절차에 의한다.

- ① “갑”은 “을”로부터 전송받은 자동계좌이체 의뢰명세에 의거 “을”의 이체지정일(실시간 수납이체의 경우 이체 의뢰 즉시)에 출금대상계좌의 지급가능잔액 범위내에서 인출하여 “을”의 모계좌에 이체하고, 별도로 그 처리결과와 자동이체 미등록, 잔액부족 등의 처리불능명세를 전송하기로 한다.
- ② “갑”이 “을”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이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동수납이체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출금일자, 출금회수, 출금금액 등 자동수납이체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객과의 모든 분쟁은 “을”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9 조 (자동이체 변경, 해지)

- ① “갑”이 자동이체 등록원장 정리차원에서 자동이체 등록 자료를 “을”에게 전송하여 자동이체 계속여부를 확인 요청할 경우 “을”은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납부자 또는 제 3 자가 “을”에게 자동이체 신청을 하고 “갑”에게 해지 요청한 경우에는 “갑”은 자동이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지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해지한 사실을 “을”에게 전송 또는 유선 통지하기로 한다.
- ③ “을”은 제②항에 따라 해지 등록한 계좌에 대하여 “을”이 자동이체 청구를 하더라도 인출하지 않기로 한다.

제 10 조 (모계좌의 인출)

“을”은 “모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입금일 익영업일 이후에 인출하기로 한다.

제 11 조 (착오 인출 처리)

- ① 업무 처리 착오(타인계좌 또는 전산오류 등)로 계좌에서 인출되어 이체 처리된 경우에는 “갑”은 착오 인출 내용을 “을”에게 유선 통지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착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착오 입금된 금액 상당액을 당일 중으로 출금 계좌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착오로 입금된 사실이 확실하고 “을”의 처리가 지연되어 고객과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갑”은 임의로 수납 모계좌로부터 통장 및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체 금액을 인출하여 처리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을”에게 유선 통지하기로 한다.
- ② “을”이 납부자로부터 직접 자동이체 신청을 받은 계좌에서 착오 인출 사고가 연 3 회(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 기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갑”은 “을”의 자동이체 신청 접수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다.
- ③ “을”은 “갑”이 제②항의 착오 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 6 조에 의거 “을”이 보관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고지의무)

- ① “을”은 납부자에게 최초 출금개시일자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자동계좌이체 청구서 및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 ②“을”은 납기일 또는 납부자 번호 등 납부자 관련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을”은 고객이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동 내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④“갑”은 “을”이 납부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고지하도록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제 3 장 대량 지급이체(급여이체 포함) 및 실시간 지급이체

#### 제 13 조 (대량지급이체 업무의 범위)

“갑”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을”이 “을”의 고객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급금의 계좌 이체업무로 한다.

#### 제 14 조 (급여이체 업무의 범위)

“갑”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을”이 “갑” 또는 타행에 개설된 “을”의 임직원 계좌로의 급여이체 업무로 한다.

#### 제 15 조 (실시간 지급이체 업무의 범위)

“갑”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을”이 “을”의 고객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급금(임직원급여 포함)의 실시간 계좌이체업무로 한다.

#### 제 16 조 (대량 또는 실시간 지급이체 업무처리의 기본요건)

- ①“갑”은 “갑”의 본지점은 물론 금융결제원의 타행환처리 공동전산망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의 계좌이체를 실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을”에게 전송한다.
- ②“을”이 “갑”에게 지급이체를 의뢰할 수 있는 이체대상 계좌의 종류는 금융결제원의 타행환 공동망을 통하여 이체할 수 있는 계좌에 한한다.

#### 제 17 조 (이체명세의 통지)

- ①“을”은 “갑”에게 이체대상명세를 이체지정일 전영업일 “갑”의 영업시간까지(실시간 지급이체의 경우 영업시간중) 상호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 ②“갑”은 제 1 항에 의하여 수신한 이체명세를 “을”의 정당하고 유효한 이체의뢰로 인정하여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한다.

#### 제 18 조 (이체업무의 처리)

- ①“을”은 이체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지정일 전영업일의 “갑”의 영업시간까지(실시간 지급이체의 경우 이체의뢰시까지) 현금으로 “지급모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②“갑”은 이체지정일에 제 17 조의 이체명세 내용대로 “지급모계좌”의 지급가능잔액 범위내에서 예금 청구서 및 통장 없이 출금하여 지정계좌로 이체한다.
- ③“지급모계좌”의 지급가능잔액이 이체의뢰금액 합계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한다.

- ④실시간 지급이체의 경우에는 “지급모계좌”에 입금된 미추심 자기앞수표 또는 가계수표로 입금된 타점권은 지급가능잔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⑤미추심 자기앞수표로 “지급모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있는 경우, 출금된 자기앞수표가 부도반환 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부도반환 당일중 동 부도금액을 재입금하여야 한다.

#### 제 4 장 대량 또는 실시간 거래명세전송 및 수취인조회 업무

##### 제 19 조 (거래명세전송 업무의 범위)

“갑”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을”이 지정한 예금계좌 또는 기타 은행상품에 대한 거래내역을 일괄 전송하는 업무로 한다.

##### 제 20 조 (실시간 거래명세전송 업무의 범위)

“갑”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을”이 지정한 예금계좌 또는 기타 은행상품에 대한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업무로 한다.

##### 제 21 조 (수취인 조회 업무의 범위)

“갑”은 “을”이 예금주 성명이나 계좌의 존재유무의 정보내역 요청이 왔을 때 그 일치여부를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 제 5 장 집금이체

##### 제 22 조 (업무의 범위)

“갑”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을”의 자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을”의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로 한다.

##### 제 23 조 (입금업무처리)

- ①“갑”은 “을” 또는 제 3 자로부터 수납한 자금을 “을” 또는 제 3 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을”의 “자계좌”에 입금처리하고 그 거래명세를 상호 연결된 전산망에 의하여 “을”에게 전송한다.
- ②“갑”은 “을”로부터 별도의 통보나 요청이 없을 경우 “갑”의 영업종료시간 현재 “을”의 “자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익영업일에 “모계좌”로 일괄이체하며, “을”은 “자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입금 당일 중에는 인출하지 않기로 한다.
- ③“갑”이 제 2 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의 “자계좌”에 “갑”의 수납점이 지급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타점권으로 예입된 자금이 있을 때에는 그 타점권의 추심결제가 끝난 후에 “모계좌”로 이체하기로 한다.
- ④“갑”이 수납한 타점권이 부도반환되었을 때는 동 부도대전을 “을”의 “자계좌” 또는 “모계좌”에서 차감하여 정리하며, 잔액부족시 “을”은 지체없이 당일중 부족금액을 “모계좌” 또는 “자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도반환된 타점권 실물은 “을” 또는 입금의뢰인에게 반환한다.

## 제 6 장 공통 사항

### 제 24 조 (업무처리의 예외)

“갑”은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관련내규 및 거래 약관에 따르기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①서비스 모계좌, 수수료 인출 계좌나 대상계좌가 없거나 해지 혹은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어 있을 때
- ②서비스 모계좌, 수수료 인출 계좌나 대상계좌에 대한 법적절차 진행 및 기타의 사유로 그 계좌의 거래가 제한되어 있을 때
- ③예금잔액증명서 발급으로 기준일자 예금잔액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제 25 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갑”과 “을”은 이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내용을 상호 연결된 전산망에 의거 출력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 요청이 있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에 의한 처리결과와 확인사항중 “갑” 이외의 타금융기관에 대한 계좌이체 결과의 조회 및 처리 결과의 전송내용은 금융결제원과 의 처리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처리결과와 전송내용과 실제 처리 내용이 상이한 때에는 최종적인 처리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을”에게 별도 통지한다.

### 제 26 조 (전산운용)

- ①본 계약의 업무와 관련한 DATA 의 송수신절차, 방법, 시간 등의 전산운용 세부사항은 “갑”과 “을”의 전산실무담당 부서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을”은 PASSWORD 및 AUTHORIZATION CODE, 대량지급이체에 사용되는 복기부호 등 본 업무수행 을 위한 안전장치를 “을”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 제 27 조 (기밀유지)

“갑”과 “을”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이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28 조 (면책)

천재지변, 정전, 통신기기, 회선, 컴퓨터의 고장 및 장애 등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 불능 등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며 본 계약내용 등 쌍방이 합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은 그 책임을 면한다.

### 제 29 조 (손배배상)

“갑”과 “을”은 합의하거나 정한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손해를 발생시킨 자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30 조 (협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1 조 (준용사항)

- ①평뱅킹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각의 대상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갑”의 관련내규 및 수신거래 기본약관을 준용한다.
- ②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을 준용한다

제 32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만료일은 계약 당해년도 12월 31 일로 정한다.

제 33 조 (변경)

“갑”과 “을”은 쌍방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34 조 (해지 및 연장)

- ①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만료일 1 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제 1 항에 의한 해지 통지가 없을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은 1 년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 35 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갑”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 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 1 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김정태 (인)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